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건설혁신과-

시행일 2021년 4월 28일

수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대표자 권순호, 정경구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대표자 권순호, 정경구		토목건축공사업 603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5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p>하자담보책임 미이행</p> <p>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의 완정역, 독정역 E/S 핸드레일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13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인천교통공사 2호선시설센터 2020-1120호(2020.02.07.)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미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 및 기계환경관리2021-4359호 (2021.04.13.)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하자보수 관련 청문회 개최일정 재확인 요청」</p>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5호</p> <p>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6. 청문 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설혁신과(건설업관리팀)	담당자	김문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전화번호	02)2133-8125	
		일시	2021.05.25(화) 14:00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청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변호사
						한민구	

서울특별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사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귀사는 청문 종료 후 행정절차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청문 종료 후 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5.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